

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
설치 및 운영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3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,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
나.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
라. 입주작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마. 위탁 운영 및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, 제5조, 제39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 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예술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.
2. “예술인”이란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창작공간”이란 작업실,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창작활동과 시민 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.
4. “입주”란 예술인이 창작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명칭 및 위치)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치하는 문화예술 창작공간(이하 “창작공간”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.

제4조(기능) 창작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문화예술 창작활동
2. 전시실 운영
3.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
4.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

5.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

6.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및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

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창작공간 입주작가 선정 및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창작공간 입주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

2. 창작공간 입주작가 의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3. 창작공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 이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11조의 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입주작가 활동 지원) 시장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9조에 따라 창작공간 입주작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창작활동 지원금
2. 전시 및 작품집 출간 비용
3.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지원금

제8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 시장은 창작공간을 전문적,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시가 출자·출연한 기관에 대하여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전항에 따라 창작공간을 위탁받아 관리·운영하는 기관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창작공간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

준용한다.

제9조(운영규정) 창작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 다만,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문화예술 창작공간의 명칭과 위치(제3조 관련)

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

명칭	위치
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	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포아로 654-10
구미청년상상마루	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시장로 13, 금오시장 3층

관계법령

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제2조(정의)
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예술”이란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, 게임,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, 정신적,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(印象), 견문,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.

3. “문화시설”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
바.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·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9조(국고보조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
2. 문화예술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
3.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4.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문화예술 창작공간 일반 운영 비용(안 제4조)
- 입주작가 활동 지원금(안 제7조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일반 운영을 위한 운영비, 시설 수리비 등 기타비용 반영
-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금 반영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	33	34	35	36	37	175
구미 청년상상마루	104	107	110	114	117	552
합 계	137	141	145	150	154	727

4. 비용추계 상세내역

•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

○ 1차년도(2023년) : 33백만원

가. 운영비 : 30백만원

- 사무관리비(공간 임차료) : 15백만원
- 사무관리비(비품구입, 집기비품 임차료 등) : 3백만원
- 공공운영비(공공요금, 수리수선 등) : 12백만원

나. 전시지원 : 3백만원

- 민간행사사업보조(월동준비전) : 3백만원

○ 2, 3, 4, 5차년도 : 매년 물가상승률 3% 반영

- 구미청년상상마루

- 1차년도(2024년) : 104백만원

가. 운영비 : 70백만원

- 사무관리비(공간 임차료) : 26백만원
- 사무관리비(비품구입, 집기비품 임차료 등) : 12백만원
- 공공운영비(공공요금, 수리수선 등) : 20백만원
- 청소용역비 등 : 12백만원

나. 행사운영비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: 34백만원

- 행사운영비(기획전 등) : 30백만원
- 입주작가 창작지원금 : 4백만원

- 2, 3, 4, 5차년도 : 매년 물가상승률 3% 반영

5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-	-	-	-	-	-
도 비	-	-	-	-	-	-
시 비	137	141	145	150	154	727
합 계	137	141	145	150	154	727

6. 부대의견

- 세출 예산은 추정치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

7. 작성자 :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박소연(054-480-6604)

소 관 부 서		문화예술과
입 안 자	과 장	박 정 은
	팀 장	오 명 화
	담 당 자	박 소 연 (480-6604)